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8조, 안15조의2, 안 제18조)
- 나. 불합리한 규제 정비 (안 제15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신설(안 제14조의2)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2) 입법예고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015.7.01 ~ 2015.7.21)
- 3)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 사유서)
- 4) 관련법령 발췌문 : 불임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지역내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 나.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임실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을 “지정·변경·취소대상”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8시까지 한다”를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변호사(법무사)”를 “변호사”로 한다.

제18조제4항제6호 “지역경제업무 담당과장”을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u>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협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제2조제4호</u>-----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u>협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u></p> <p>2. <u>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u></p>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지역 내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내 소비자 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나.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4.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임실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삭 제>

라. 지역 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

마.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단체 대표

바.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사.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아. 기타 임실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임실군 공무원 중 지역경제업무 담당과장

⑤ (생략)

<신설>

<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제14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 4. (생략)

<신설>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취소시 고려사항) ---

-----지정·변경·취소-----
-----.

1. 지정·변경·취소대상-----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산업보존 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 5. (생략)
6. 지역경제업무 담당과장

⑤ (생략)

제2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법 제12조 제2항의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

-----.

- 1.-----변호사-----

2. ~ 5. (현행과 같음)
6. 도매업, 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제23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3명이하의 대표자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선임된 대표자(대리인)를 해임하거나 바꿀시에도 또한 같다. ② 선정된 대표자(대리자)는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 등은 다른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때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삭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지역경제과장 한성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46		
정책명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이자운	전화번호 063-640-240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7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신설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7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지역경제과장 귀하</p>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